

대전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1가단9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20.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1711호), 2021. 10. 2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1),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 E, F 등과 더불어 해당 금원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별지

1)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추후 구체적인 답변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라고만 기재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는 채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만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게 다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관한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